

충청북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상돈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20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사부설 주차장 주차료에 임신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 감면을 추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임신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차료 감면 조항 신설(안 제5조제3항제 2호 다목 및 라목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신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– 안 제5조 주차요금 감면조항에,

- 제3항제2호 다목에서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내용을,
- 제3항제2호 라목에서는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인구증가 및 출산확대 장려 정책에 부합하고, 임신부 배려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